

부천시명에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

1. 제안이유

국제통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명예통상관의 임무

-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제출
- 관내 국제협력관련 방문단의 활동 주선, 안내 등 현지활동에 적극 협조 등

나. 위촉대상

자매결연 및 경제협력 조인지역내 거주교민으로서 국제협력분야 종사자 또는 경험있는 자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운영비 등은 얼마나 예상합니까?	• 현재 예측으로서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없 음

부천시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출년월일 : 1995. 2. 8

의안번호	320호
------	------

제 출 자 : 총무위원회

1. 수정이유

통상관이란 명칭이 협의의 의미가 있어, 통상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교류 협력 등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명예통상관”용어를 “명예국제협력관”으로 명칭 변경.

2. 주요골자

- 명칭변경 : 부천시 명예통상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천시 명예국제협력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변경
- 본문변경 : 후 첨

부천시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부천시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를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 조례로 명칭 변경한다.

제1조(목적) “국제통상업무”를 “국제협력업무”로, “부천시명예통상관(이하 명예통상관이라 한다)”를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이하 명예국제협력관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제2조(임무) 제1항 “명예통상관은 통상증진”을 “명예국제협력관은 국제협력”으로 수정한다.

제2항 “명예통상관은 시내통상관련”을 “명예국제협력관은 관내국제협력관련”으로 수정한다.

제3항 “명예통상관은 시내”를 “명예협력관은 관내”로 수정한다.

제4항 “명예통상관”을 “명예국제협력관”으로 수정한다.

제3조(위촉대상) “명예통상관으로”를 “명예국제협력관으로”로 “통상분야”를 “국제교류분야”로 수정한다.

제5조(품위유지) “명예통상관”을 “명예국제협력관”으로 수정한다.

제6조(초청등) “명예통상관”을 “명예국제협력관”으로 수정한다.

제7조(경비지원) 제1항 “명예통상관에게 통상활동”을 “명예국제협력관에게 국제교류협력활동”으로 수정한다.

제2항 “소요경비는 신청된 증빙서에 의거하여 월별로 지급한다”를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1. 명칭변경 : “부천시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를 →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로 명칭변경

2. 본문변경

현	행	수	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국제통상업무</u> 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u>부천시명예통상관(이하 “명예통상관”이라 한다)</u> 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국제협력업무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이하 “명예국제협력관”이라 한다)
제2조(임무)	① <u>명예통상관</u> 은 통상증진을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매분기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2조(임무)	① 명예국제협력관은 국제협력증진

② 명예통상관은 시내 통상관련방문단의 활동주선, 안내 및 연락 등 방문단의 현지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한다.

③ 명예통상관은 시내 생산유망품목의 현지홍보 및 판매망 연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명예통상관은 국내외 각종 공사(公私)활동시 시정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위촉대상)

명예통상관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자매결연 및 경제협력조인지역내 거주교민으로서 통상분야종사자 또는 경험이 있는 자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4조(생략)

제5조(품위유지)

명예통상관으로 위촉된 자는 일정한 범위내에 부친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초청등)

시장은 명예통상관으로 위촉한 자에게 시단위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교통비, 체제비 등을 실비 변상할 수 있다.

제7조(경비지원)

① 명예통상관에게 통상활동을 위한 자료송부 및 통신료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요경비는 신청된 증빙서에 의거하여 원별로 지급한다.

제8조(생략)

② 명예국제협력관은 관내국제협력관련

③ 명예국제협력관은 관내

④ 명예국제협력관은

제3조(위촉대상)

명예국제협력관으로

국제교류분야

제4조(생략)

제5조(품위유지)

명예국제협력관으로

제6조(초청 등)

..... 명예국제협력관으로

제7조(경비지원)

① 명예국제협력관에게 국제교류 협력활동을

② 삭제

제8조(현행과 같음)

부천시 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 명예국제협력관(이하 “명예국제협력관”이라 한다)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① 명예국제협력관은 국제협력을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매분기마다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명예국제협력관은 관내국제협력관련 방문단의 활동주선, 안내 및 연락 등 방문단의 현지 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한다.

③ 명예국제협력관은 관내 생산 유망품목의 현지 홍보 및 판매망 연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명예국제협력관은 국내외 각종 공사(公私)활동시 시정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위촉대상) 명예국제협력관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자매결연 및 경제협력조인지역내 거주 교민으로서 국제교류분야 종사자 또는 경험이 있는 자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인(교민)회 간부
2. 상공인(무역업, 기업체 임원)
3. 기타 주재국에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

제4조(위촉방법) 시장은 제3조의 대상자를 선정 후 위촉장을 수여한다. 대상인원은 원칙적으로 지역별 1명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의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품위유지) 명예국제협력관으로 위촉된 자는 일정한 범위내에 부천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초청 등) 시장은 명예국제협력관으로 위촉한 자에게 시단위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에 개상된 범위 내에서 교통비, 체재비 등을 실비 변상할 수 있다.

제7조(경비지원) 명예국제협력관에게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위한 자료송부 및 통신료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